

# 평창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회 부 경 위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. 6 .232 평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
나. 회 부 일 자 : 1999. 7. 27

다. 상 정 일 자 : 1999. 7. 28 제69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제2차본회의

### 2. 제 안 이 유

- 지역문화예술 진흥,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립된 평창군립도서관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도서관 시설의 사용, 도서의대출 및 열람등의 근거를 정함  
(안제4조)
- 나. 시설의 사용료,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다. 교육기관 및 민간사회단체(법인)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(안 제9조)
- 라. 군수가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(안제10조)
- 마. 수탁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근거를 정함(안제11조, 제12조)
- 바. 군수는 수탁자에게 대하여 검사및조사를 할 수 있는 감독근거를 정함(안제14조)

사.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 
규정(안제24조)

#### 4. 검토결과

##### ■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

-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「지역사회의 정보제공 및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」로 규정되어 있고,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이를 설립·운영하는 당해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
- 위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사무중 조사, 검사, 검정, 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,의무와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.

##### ■ 종합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진부면 하진부리 166-18번지 평창군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사용허가,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,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, 사용자 변상책임, 사용자의 설비등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과
- 위탁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,수탁자의 책무, 감독, 위탁의 철회, 등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.